

 	<h1>보 도 자 료</h1>			
	<b>보도</b>	<b>2021.10.18.(월) 조간</b>	<b>배포</b>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송 병 관(02-2100-2690)	<b>담 당 자</b>	김 치 중 사무관 (02-2100-2693)
	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장 박 형 준(02-3145-7750)		김 세 동 회계관리총괄팀장 (02-3145-7752)
	한국공인회계사회 자율감리본부장 심 영 수(02-3149-0381)		주 시 현 자율규제행정팀장 (02-3149-0396)
	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강 경 진(02-2087-7307)		한 영 근 경제조사팀장 (02-2087-7190)
	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장 김 준 만(02-368-4505)		김 변 주 회계제도팀장 (02-368-4580)

## 제 목 :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

- ◇ **지정감사 관련 부당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할 예정인 만큼 지정감사인은 법령 등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**
- ◇ **지정감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.**

### 1 추진배경

-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의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올해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  - \* [감사인 지정 상장사(개, 비중 %)] ('17) 170/7.8% → ('18) 284/12.7% → ('19) 807/34.7% → ('20년) 1,060/44.5% → ('21<sup>예</sup>) 1,253/51.6%
-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,
  -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소 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## 2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

### < 기본 방향 >

- ◇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체계화하여 적시에 공표
- ◇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발생시 신속·엄중하게 제재

### 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마련

-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·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「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」을 발표(21.10.18)하고
  - 이를 감사인을 지정 받은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기업들이 모범규준에 따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#### < 모범규준 주요내용 >

- ① 감사인력·시간·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·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
- ②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
- ③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(회계부정조사)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
- ④ 전·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
- 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

※ 모범규준 세부내용은 [별첨 2] 참조

### 나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

- '19년부터 운영해 온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으로 확대하고,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절차의 신속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.

- ① (제재절차)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,
- 금감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정제외접수 및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겠습니다.
- \* (현행) 신고 → 자율조정 → 한공회 윤리위 징계 → 지정취소 · 지정제외접수 부과  
 (개선) 신고 → 자율조정 → 지정취소 → 협의체조사 → 지정제외접수 부과 및 징계부과
- ② (센터 확대) 신고센터가 감사보수 뿐 아니라 「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」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\*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, 금감원 · 한공회가 신속히 조정 · 처리하겠습니다.
- \* 예) 감사계획 · 인력 · 보수 · 시간 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,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자료 요구 또는 제3자 검증 요구 등
- \*\* 신고센터명칭도 「감사보수 신고센터」에서 「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」로 변경

※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· 상담센터

① 신고센터(금감원 ☎ 02-3145-7975/7761 / 한공회 ☎ 02-3149-0393)

- 금감원의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eacrs.fss.or.kr)과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.

※ 신고방법 [별첨 4] 페이지 1~5 참고

② 상담센터(상장회사협의회 ☎ 02-2087-7190~4 / 코스닥협회 ☎ 02-368-4580~4)

- 상장협 · 코스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상담신청방법 [별첨 4] 페이지 6~7 참고

## 다 전 · 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

□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「전 · 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」를 통해 조율이 가능합니다.

- 올해는 협의회 위원으로 회계기준원과 산업별 전문가(2인)가 추가 되고 협의회 운영방법 등이 보다 구체화되어 공표되는 만큼 예년 보다 의견조율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※ 협의회 관련 문의 (한국공인회계사회 ☎ 02-3149-0394)

※ 협의 신청방법 및 운영절차 등은 [별첨 3] 참조

## 라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

-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부하여 시장의 오인을 불식시키겠습니다.
  - (오해)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, 회계법인은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되고 기업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고 오인
  - (실제) 감사시간이 여타 기업, 전년도 감사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 부과
- 아울러, 「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」에도 표준감사시간 성격(가이드라인)을 명문화하겠습니다.

## 3 기대효과

- ① 모범규준의 제정·시행으로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②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행위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- ③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사시간이 정해질 것입니다.

## 4 향후계획

- 「지정감사인 업무 수행 모범규준」은 행정지도 제정절차에 따라 11월 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.
  - 「전·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」는 12월말까지 운영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신청을 받습니다.
  -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는 10월 18일부터 부당행위 신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.

- ※ 별첨 1.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방안
- 2.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(안)
- 3. 전·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 운영 지침
- 4. 금감원·한공회 신고센터 및 상장협·코스닥협회 상담센터 이용방법

### < 용어 설명 >

- (감사인) 공인회계사가 설립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자
- (지정감사)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외부감사의 공신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(외감법 §11)
- (주기적 지정제)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 상장법인(코넥스 제외) 및 소유·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\*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(외감법 §11②)
  - \*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로서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%이상이고,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
- (표준감사시간) 감사업무의 품질제고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(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)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\*을 거쳐 정한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시간(외감법 §16의2)
  - \* 회사 및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,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,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 표준감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
- (전기·당기)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를 말함

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</p>	<p>금융위원회 대 변 인 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</p>	
---	---	--	-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